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22-110관련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2. 12. .

발 의 자 : 최은하 의원 외 1명

1. 수정이유

체육계의 폭력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청장 책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안 제2조 제목 “(체육진흥 시책과 권장)”을 “(구청장의 책무)”로 수정함.

나.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.

② 구청장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 및 인권침해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체육진흥 시책과 권장)”을 “(구청장의 책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구청장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 및 인권침해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2조(체육진흥 시책과 권장)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구청장의 책무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<u>구청장은 성폭력 등 체육계 의 폭력 및 인권침해로부터 선 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</u></p>